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 1 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의무 부여〉
■ 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36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의무 부여	2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정의원 등 3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23.
3. 회부연월일 : 2025. 1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새로운 국가 임무의 정립이 필요함.

한편 2024년 기준 67개 법정기금은 자산 3,050조 원이고 여유자금은 1,400조 원 규모임. 그러나 여유자금의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국가재정의 잠재력이 사장되고 있음.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혁신형 벤처에 의무 투자를 하게 한다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공급되어 청년창업, 고용확대, 지역균형, 산업 다변화, 수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국가 신산업을 키우고 그 성과를 국민과 나눌 수 있도록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1조제1항 및 제2항).

Ⅲ. 검토의견

1.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의무 부여(안 제71조제1항 및 제2항)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의 기금관리주체에 여유자금의 10%를 벤처투자에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u>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 ----- ----- ----- ----- <u>기금</u> <u>여유자</u> <u>금 중 100분의 10을 그 기금운</u> <u>용계획에 따라 제2조제2호에</u> <u>따른 벤처투자를 하거나, 제2</u> <u>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u> <u>합,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u> <u>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u> <u>여야 한다.</u>
② 기금관리주체가 <u>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u>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② ----- <u>기금운용계</u> <u>획에 따라</u> ----- ----- ----- -----

· 허가·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 ④ (생략)	-----. ③ · ④ (현행과 같음)
--------------------------------------	--------------------------

2024년 벤처펀드 결성규모는 10조 5,550억원으로 2021년 17조 8,481억원에서 40.9% 줄었고, 결성펀드 수는 811개로 2021년 1,198개에서 32.3% 감소하였음.

2021~2024년 벤처펀드 결성실적

(단위: 억원, 개)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대비
결성금액	178,481	176,401	130,328	105,550	△19.0%
벤처투자조합	95,490	110,634	68,031	57,571	△15.4%
산기술사업투자조합	82,991	65,767	62,297	47,979	△23.0%
결성펀드 수	1,198	902	859	811	△5.6%
벤처투자조합	404	380	290	286	△1.4%
산기술사업투자조합	794	522	569	525	△7.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현행법상 벤처투자를 할 수 있는 기금은 시행령¹⁾에 규정된 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44개 기금으로 현재까지 벤처투자조합 출자 이력이 있는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7개로 전체의 10.4%이고 출자규모는 연간 2,000~7,000억원 수준으로 여유자금의 0.1~0.5%에 불과한 실정임²⁾.

2021~2025년 법정기금 벤처투자조합 출자현황

(단위: 억원, %)

구분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 (여유자금 대비 출자비중)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국민연금기금	1,050	5,690	2,650	1,500	2,220
	(0.1)	(0.4)	(0.1)	(0.1)	(0.2)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400	800	300	300	600
	(0.7)	(2.3)	(0.7)	(0.4)	(0.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600	950	550	150	-
	(1.9)	(1.5)	(1.2)	(0.2)	-
공무원연금기금	300	-	500	-	-
	(1.5)	-	(2.2)	-	-
기술보증기금	300	-	-	-	-
	(1.2)	-	-	-	-
무역보험기금	-	-	-	-	200
	-	-	-	-	(0.4)
합 계	2,650	7,440	4,000	1,950	3,020
	(0.2)	(0.5)	(0.3)	(0.1)	(0.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등) ①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1의 기금을 말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별표 1에 따른 기금을 관리하는 자에게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퍼센트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2) 한편 정부가 최근 수립한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 개정(안)」(기획예산처, 2026.1.29.)은 벤처투자에 대한 가점 확대(1→2점), 최소금액 상향(대규모 2→3조원, 대형 1,000→1,500억원), 벤처펀드 결성 초기 수익률의 평가 대상 제외 등 연기금의 혁신성장 분야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의 기금운영평가를 개정 내용을 담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전체 법정기금 여유자금 297조 9,573억원(2025년 예산 기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벤처투자가 의무화되면 2024년 전체 벤처펀드 결성액 10조 5,550억원의 2.8배에 달하는 29조 7,957억원의 공공 모험자본이 벤처투자시장에 투입되므로 경기 불확실성, 회수시장 침체 등으로 위축된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양적 성장에 기여하고 AI 등 딥테크 분야 혁신기업 발굴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기금 여유자금 10%를 벤처투자하도록 기금관리주체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각 기금은 고유의 설치목적과 자산운용지침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금운용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³⁾, 획일적인 벤처투자 의무화는 기금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단기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 기금의 경우 통상 8년~10년 운용⁴⁾되는 벤처펀드 출자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3) 「국가재정법」

제62조(기금관리·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③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조기 청산이 가능하지만 평균 IPO 소요기간(2023년 기준 15.5년,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을 감안할 필요 있음.

참고로 지난 2025년 법률 개정(개정 2025.12.30. 시행 2026.7.1.)에 따라 벤처투자를 할 수 있는 기금이 현행법 시행령⁵⁾에 규정된 고용보험 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44개 기금에서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67개 전체 법정기금으로 확대된 바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연 40조원 규모 벤처투자 시장 조성 및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확대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기금별 상이한 운용 여건과 자산운용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주체의 벤처투자 이행 의무보다는 벤처투자를 위한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기술보증기금은 기금 여유자금 대부분은 즉각적 대위변제를 위한 지급준비금이므로 10% 의무 출자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459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등) ①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1의 기금을 말한다.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별표 1에 따른 기금을 관리하는 자에게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퍼센트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IV. 참고자료

1

법정기금 운용규모 및 여유자금 현황 ('25 예산 기준)

(단위: 억원)

법정 기금	운용자산	여유자금
67개	9,550,174	2,979,573
사회보험성기금(6개)		2,807,753
고용보험기금	276,955	83,842
공무원연금기금	337,737	54,550
국민연금기금	1,775,695	1,282,790
군인연금기금	46,052	2,229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37,133	72,62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34,181	85,505
금융성기금(8개)		332,781
기술보증기금	33,080	14,64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2,651	17,43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511	10
무역보험기금	57,807	51,209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8,019	6,787
신용보증기금	115,125	67,26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7,496	9,43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8,092	32,013
계정성기금(5개)	4,609,772	826,853
공공자금관리기금	3,048,300	892
공적자금상환기금	64,384	23
복권기금	88,685	8,407
양곡증권정리기금	5,509	260

법정 기금	운용자산	여유자금
외국환평형기금	1,402,894	817,271
사업성기금(48개)	1,799,868	372,378
과학기술진흥기금	1,986	935
관광진흥개발기금	17,142	4,423
국가유산보호기금	1,690	117
국민건강증진기금	45,405	2,565
주택도시기금	1,033,915	232,018
국민체육진흥기금	30,372	5,916
국유재산관리기금	34,820	10,467
국제교류기금	1,059	292
군인복지기금	10,118	2,764
근로복지진흥기금	5,661	2,510
금강수계관리기금	1,908	685
기후대응기금	26,217	2,464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376	128
남북협력기금	14,438	943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5,978	3,92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4,059	3,553
농지관리기금	23,289	3,024
대외경제협력기금	23,527	291
문화예술진흥기금	5,777	981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4,062	61,909
방송통신발전기금	8,705	924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449	480
보훈기금	6,962	4,888
사법서비스진흥기금	3,903	2,557
사학진흥기금	5,650	246

법정 기금	운용자산	여유자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2,352	374
석면피해구제기금	623	14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70,860	-
수산발전기금	8,204	197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491	481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자불기금	31,045	1,094
언론진흥기금	508	212
양성평등기금	8,410	381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697	796
영화발전기금	937	249
원자력기금	6,432	3,106
응급의료기금	6,401	274
임금채권보장기금	9,142	2,848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2,592	535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826	1,937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21,829	5,457
전력산업기반기금	38,752	3,241
정보통신진흥기금	10,010	449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115,595	-
지역신문발전기금	100	12
청소년육성기금	1,714	79
축산발전기금	10,254	757
한강수계관리기금	5,626	754

주1: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 변경

주2: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은 폐지되었으나 현행법 시행령에 미반영 상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